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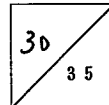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4	16	1995. 7. 20	중재 김명호

의안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17조 및 제65조

제의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표지어음의 발행조건을 완화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- 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(생 략)

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개정(안)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1. 발행행시 : 각 금융기관이 할인·보유하고 있는 상임어음 또는 무역어음(이하 "원어음"이라 한다)을 분할 또는 통합한 표지어음을 할인서으로 발행	2. 최고이율 :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1. (현행과 같음)				
3. 만기 :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에서 60일이상 180일이내(중도환매 불가능) 다만, 잔여만기가 60일이상인 수개의 원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180일이내에서 각 원어음의 잔여만기중 최장만기 이내	3. 만기 :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에서 30일이상 180일이내(중도환매 불가능) 다만, 잔여만기가 30일이상인 수개의 원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180일이내에서 각 원어음의 잔여만기중 최장만기 이내	2. (현행과 같음)				- 최단만기 단축
4. 최저발행금액 : 2천만원	4. 최저발행금액 : 1천만원					- 최저발행금액 인하
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전월중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(잔월 10일, 20일 및 말월 기준 할인액에서 일변대출액을 차감한 잔액의 평균치)의 50% 이내	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(월평균 발행잔액 기준) : 전월중 상임어음 및 무역어음 할인 평균잔액에서 일변대출 평균 잔액의 평균치의 50% 이내					- 발행한도 산정기준 및 동 한도 관리기준 변경
6. 실시일자 : 1995. 5. 20	6. 실시일자 : 1995. 7. 24 다만, 위의 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는 1995. 8. 1부터 실시					- 실시일자 명시